

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2. 3. .

환 경 부
(수자원정책과)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·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댐 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(법률 제18284호, 2021. 6. 15. 공포, 2022. 6. 16. 시행)됨에 따라 법령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 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 타 법령에서 법률제명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일괄 개정을 통해 법령 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8284호, 2021. 6. 15 공포, 2022. 6.16 시행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을 “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제8항”을 “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제9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”을 “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14조제1항”을 “영 제16조제1항”으로, “첨부하여야”를 “첨부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영 제14조제2항”을 “영 제1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“영 제14조의2제1항”을 “영 제17조제1항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 중 “영 제14조의2제2항”을 “영 제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영 제18조제2항”을 “영 제10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“사람은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8항”을 “사람은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9항”으로 하고, 같은 뒤쪽 제3호 중 “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”을 “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”을 “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의2서식 중 “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2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”을 “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제2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의3서식 중 “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2항”을 “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

16조의2제2항”으로, 같은 서식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”를 “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제1항제1호 중 “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제2쪽제8호가목 중 “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②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2조 중 “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③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3호다목1) 중 “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”를 “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④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6호가목 중 “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”를 “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”로, “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”을 “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붙임 제2쪽 중 “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	<u>댐건설 ·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<u>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</u>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. 제4조(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 을 표시하는 증표) 「<u>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</u>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제 8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 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 지 제1호서식과 같다. 제5조(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) ① 「<u>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 호서식과 같다.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댐	제1조(목적) ----- 「<u>댐건설 ·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</u>」 ----- ----- ----- --. 제4조(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 을 표시하는 증표) 「<u>댐건설 ·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제9항----- ----- -----. 제5조(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) ① 「<u>댐건설 · 관리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(이 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 ----- -----. ② 영 제16조제1항-----

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~ 7. (생략) ③ <u>영 제14조제2항</u>에 따른 댐 준공인가 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. 제5조의2(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) ① <u>영 제14조의2제1항</u>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. ② <u>영 제14조의2제2항</u>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. 제6조(경고표지의 설치) <u>영 제18조제2항</u>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. 다만, 방류일시,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한다.	----- ----- <u>첨부해야</u> 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③ <u>영 제16조제2항</u>----- ----- -----. 제5조의2(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) ① <u>영 제17조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. ② <u>영 제17조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 제6조(경고표지의 설치) <u>영 제10조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